

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추가공고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·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영 동 군 수

□ 제목 :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(방목금지)

- 목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- 지역 : 영동군
- 대상 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
- 기간 :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
 - *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
- 내용 :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(추가)
 - * 방사 사육 : 닭·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·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
 - 다만,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·장비*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
 - *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, 쥐·곤충을 없애는 시설,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, 외부 사람·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
- 근거 법령 :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제3항
- 위반 시 벌칙 :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문의: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(☎043-740-3443)

'23/'24년 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

구분	연번	주요 내용	명령대상	시행기간	위반시 벌칙
행정명령	1	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	축산차량 및 종사자	'23.10.1~ '24.2.29. (필요시 연장)	1천만원 이하 과태료
	2	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	축산차량	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	3	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* 외 진입금지 * 진입가능 : 가축, 사료, 분뇨, 깔짚, 방역 * 불가 : 알, 난좌, 동물약품, 상하차반, 택배 등	축산차량		
	4	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	알운반차량		
	5	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*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,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	산란계, 메추리 농장		
	6	시·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	분뇨차량		
	7	중계·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*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	사료차량		
	8	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,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* 사전 신고, 방역수칙 준수, 서약서 제출 준수	축산차량 및 종사자		
	9	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* 공용 사용 금지 * 파레트, 합판, 왕겨살포기	가금농장		
	10	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·중추, 산란성계,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	전통시장 판매소, 거래상인		
	11	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* 다만, 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·장비*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 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	가금농장	'23.12.1~ '24.2.29. (필요시 연장)	
공고	1	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	가금농장	'23.10.1~ '24.2.29. (필요시 연장)	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
	2	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·보관	가금농장		
	3	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* 불가피한 경우 세척·소독 후 반입	가금농장		
	4	왕겨살포기 세척·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,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	오리농장		
	5	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* * 고정식 소독기 + 고압분무 소독	가금농장		
	6	소독/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	가금농장		
	7	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	가금농장		
	8	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	가금농장		